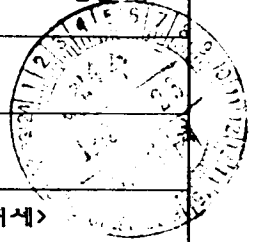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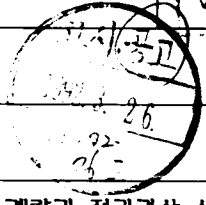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상공 28420-47)	전화 : 750-8356	기안일 문서번호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집처 보존기간	3년	중심	
시행일자	92. 3.		
보조 기 관	산업경제국장 <b>권광</b> 상공과장 <b>전철</b> 표준계장 <b>[인]</b>		
기안책임자	김준기 <김광모>	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반신명의	시 장
제 목	'9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제 1 안>	내 부 결 재		
	1. 계량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내용을		
	계량기 소유자에게 널리 알리고자 계량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별첨 공고		
	<안>와 같이 <u>신문공고</u> 코자 합니다.		
	가. 공고문 <안> : 별첨		
	나. 소요예산 : 35,000*4단*9 CM*24*1.1 <부가가치세>		
	= 2,772,000		
	다. 예산과목 : 산업경제비, 상공관리, 상공관리, 수용비및 수수료		
	라. 지출방법 : <u>공모금</u> 에게 <u>계재의뢰</u> 하고 한국업론회관 청구예외에 직불		

원본외조필



첨부 : 공고문<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 ~~홍보계~~ **홍보계** ~~담당관~~ **담당관**

발신 : ~~승평과장~~ **승평과장** ~~승평과장~~ **승평과장**

제목 : '9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1. 계량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공고를 별첨 <안>과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92. 4.1일자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문<안> : 별첨

나. 공고규격 : 4단 \* 9CM \* 2개사

다. 소요예산 : 2,772,000원

라. 게재신문 : 조,석간 각1개사

원본대조필

첨부 : 공고 <안> 4부. 끝.

<제 3 안>

수신 : 수신처참조

제목 : '9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1. 계량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공고<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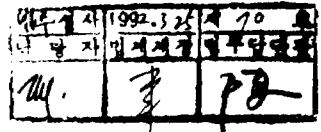
52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구, 동, 소 및 공업시험소등 자체 게시판 게시, 공고에 입 1를	
기아기 바라며, 각구별 검사일정에 대한 공고가 4.1차 조, 석간 <각1개신문>에 공고	
되니 참고하기 바람.	
첨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안> 1부. 끝.	
수신처 : 서구 1-22, 공업시험소	
<제 4 안>	
수신	: 공업진흥청장
참조	: 계량표준과장
제목	: 9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1. 계량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관내 '9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별첨 공고와 같이 실시함을 통보합니다.	
첨부	: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안> 1부. 끝.

원본대조필



1992년  
서울특별시 공고 제 21호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정기검사를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공고하니 검사대상자는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992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검사대상 : 상거래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정기검사 대상계량기 전부  
<부푼계및 질량계 저울>
2. 검사기관

구정별	검 사 기 간	구정별	검 사 기 간
종로구	92. 5. 11 - 6. 12	마포구	93. 5. 14 - 6. 16
중 구	92. 5. 4 - 6. 22	양천구	92. 6. 1 - 6. 30
용산구	92. 5. 6 - 6. 19	강서구	92. 5. 1 - 5. 28
성동구	92. 5. 7 - 6. 18	구로구	92. 5. 1 - 6. 29
동대문구	92. 5. 1 - 6. 9	영등포구	92. 5. 11 - 6. 15
중랑구	92. 5. 1 - 5. 28	동작구	92. 5. 4 - 5. 28
성북구	92. 5. 1 - 6. 30	관악구	92. 5. 11 - 7. 31
도봉구	92. 5. 6 - 6. 8	서초구	92. 5. 7 - 6. 11
노원구	92. 5. 6 - 5. 22	강남구	92. 5. 6 - 5. 26
은평구	92. 5. 8 - 6. 30	송파구	92. 5. 1 - 6. 12
서대문구	92. 5. 4 - 5. 29	강동구	92. 5. 6 - 5. 20
		공업시험소	92. 6. 1 - 7. 31

서울특별시공고 제 21호

3. 검사장소 : 동사무소 <계량기소재지>, 다만 굵달림 10톤이상 저울및 탱크로오리는 서울서공업시험소
4. 참고사항 : 다음의 계량기 소유자는 정기검사 기일전에 구청장및 공업시험소장에게 신고한후 별도 검사일을 지정받아 계량기 소재장소에서 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가. 계량기의 구조 기탁사유로 온반이 곤란하거나 그 수가 많은 경우
- 나. 계량기가 토지 또는 건물 기탁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
- 다. 계량기의 성질상 온반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정도에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5. 기탁 문의사항은 각구청 산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